



제311회 임시회

2012.06.13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-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(중학구)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(중학구)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 
학교군에 관한 고시 개정안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### 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### 3. 개정이유

- 청원군 부용면 소재 부강중학교가 2012. 7. 1. 세종특별자치시 편입에 따른 부강중학구 삭제와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(중학구)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내용 중 일부를 삭제 및 수정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가. 청원군 부용면 부강 중학구 삭제(안 별표 1)
- 나. 단양군 단성중학구와 충남 연동중학구 일부 수정 및 삭제 (안 별표 )

### 5. 검토의견

- 청원군 부용면 소재 부강중학구가 2012. 7. 1.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되어 부강중학교 학교군을 삭제하는 것이고,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(중학구) 및 청주시 후기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내용 중 일부를 삭제 및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.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□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#### 제68조 (중학교 입학방법)

-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·학교군·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
#### 제84조 (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)

-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군은 시·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